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부산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유천열 전화 051-606-4164	보 도 자 료 2021. 2. 25.(목)

제 목	수사과정에서 영장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불법 수집한 경찰관 3명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부산지방검찰청 인권 · 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유현정)는 2021. 2. 25.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불법 수집한 경찰관 3명 및 이를 제공한 은행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ㄱ○○(48세, ○○경찰청 경감)
- ㄴ○○(53세, ○○경찰청 경위)
- ㄷ○○(40세, ○○경찰청 경사)
- ㄹ○○(46세, ○○은행 차장)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(ㄱ○○, ㄴ○○, ㄷ○○은 공모하여) 2020. 2.경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은 후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적법절차를 생략한 채 수사협조의뢰 공문으로 수사대상자 A의 계좌거래내역,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아 **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]**
- (ㄹ○○) 2020. 2.경 위 경찰관들이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인 A의 계좌거래내역,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**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]**

Ⅱ 수사 경과

○ ’20. 3. A의 사기 구속 송치사건 수사 중 본건 적발

○ ’20. 4. ~ 8. 경찰관, 특사경, 은행 직원 조사 등

※ 영장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속칭 ‘저널테이터’ 등을 수집한 사례 추가 확인(경찰관 3명, 특사경 1명, 금융기관 직원 4명)

○ ’20. 10. 금융위원회, 속칭 ‘저널데이터’도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만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

○ ’20. 11. ~ ’21. 2. 자료 분석, 피의자 조사 등

○ ’21. 2. 25. 불구속 기소

Ⅲ 참고사항

○ 본 사안은 사법경찰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금융거래 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송치사건 수사 중 적발한 것임

○ 유사 사례 확인결과, 사법경찰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수사대상자들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, 금융기관 직원들은 영장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사법경찰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침해한 일부 사례가 추가로 발견됨

- 다만, 영장 없이 속칭 ‘저널데이터’ 등을 수집하였으나, 위 자료 명의인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 추가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경찰관 3명, 특사경 1명, 이를 제공한 금융기관 직원 4명에 대하여는 위 영장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를 수집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같은 날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음

※ 속칭 ‘저널데이터’는 거래일자, 거래명, 거래금액, 계좌번호(1자리가 일부 생략되기도 함) 등이 기재된 법률상 영장이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

○ 부산지검은 2021. 2. 1.자로 영장 전담 검사를 2명으로 증원하여 사법경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동종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▨